



- 취업제한여부 확인요청서(취업승인신청서)는 취업개시 30일 전까지 소속 기관의 장에게 제출(영 제33조의2 및 제34조제1항)

참고 질의·응답

1. 현재 재직 중인 공직자도 취업심사가 가능한지?

- ▶ 법 제18조(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및 취업승인)에서 취업심사대상자가 취업제한 기관에 취업하려는 경우에는 퇴직 당시 소속되었던 기관의장을 거쳐 관할 공직자 윤리위원회에 취업제한 여부 확인을 요청하거나 취업승인을 신청하도록 그 절차를 규정하면서 공직에서 퇴직한 자를 전제로 하고 있고
- ▶ 만약에 현직자에게 심사신청을 허용할 경우에는 재직 중 업무처리에 있어 부당한 영향력 행사 등을 통한 불공정한 업무처리 가능성이 발생할 수 있는 우려가 있으므로 현직 공직자에게는 취업심사 신청이 허용되지 않음

2. 취업제한여부확인요청서 또는 취업승인신청서의 작성방법에 퇴직예정자는 현재의 소속 등을 적으라고 되어 있는데, 이 문구로 볼 때 현재 재직 중인 공직자도 취업심사가 가능한 거 아닌지?

- ▶ 신청서 서식의 작성방법에 기재되어 있는 퇴직예정자의 경우 「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6조제2항^{*}에 의해 전역 예정일이 6개월 이내 있는 군인만 해당됨
* 제대군인지원법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 : 현역 복무 중에 있는 사람이 전역예정일 전 6개월 이내에 채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대군인으로 본다.

(2) 제출서류

- 취업제한여부 확인요청서(승인신청서)와 함께 취업제한기관의 장이 발급한 취업예정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함(규칙 제16조의2 제17조제1항)

나. 소속기관장의 확인요청서(신청서) 검토 및 이송

- 소속기관의 장은 확인요청(승인신청)사항에 대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확인요청서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 소속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송(영 제33조의3제1항 및 제34조제2항)

다. 소속 중앙행정기관장의 확인요청서(신청서) 조사·확인 및 이송

- 소속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요청사항에 대한 조사·확인 후 이송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이송(영 제33조의3 제1항 및 제34조제2항)
 - 업무관련성 적용기간(5년) 내에 전입, 퇴직 후 재임용 등으로 근무기관이 복수인 경우 해당 기관의 검토의견서를 제출받아 검토한 후 이송

라. 심사·결정 사항의 통지

-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는 심사·결정 후 그 결과를 요청한 사람, 소속 기관장 및 소속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함(영 제33조의3제2항)
 - 취업이 제한 될 때에는 취업이 제한되는 사유를, 취업확인 또는 취업승인을 받은 경우는 취업이 가능하다는 취지를 통지하여야 함

3. 취업제한여부(취업승인)의 검토사항 및 제출서류

가. 확인·조사 및 검토사항(영 제33조3제1항)

① 취업심사대상자 및 취업제한기관(협회) 해당 여부

※ 협회는 그 회원사에 인사혁신처장이 확정·고시한 취업제한 대상 영리사기업체가 가입하고 있는 협회만이 심사대상이 됨

②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취업제한기관 간의 밀접한 관련성 여부 확인·조사

※ 밀접한 관련성 업무범위(법 제17조제2항제1~8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 제2항)에 해당되는지 여부

③ (취업승인 신청 시) 취업 후 퇴직 전 소속하였던 기관에 영향력 행사 가능성 여부 확인·검토

※ 재직 시 취득한 정보·지식 및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취업 후 퇴직 전 소속기관에 영향력 등을 행사하여 취업제한기관에 특혜를 줄 수 있는지 여부



등을 다각적으로 검토(인터넷 검색, 취업예정기관의 전임자나 유사분야 퇴직 공무원에 대한 문의 등)

④ (취업승인 신청 시) 취업승인의 특별한 사유 해당 여부 확인·검토

※ 밀접한 업무관련성이 있으면 취업을 제한하는 취업제한제도에도 불구하고 취업 심사대상자의 취업을 승인할 만한 정도의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는지 여부를 공정하고 세밀하게 검토

나. 제출서류

- 취업제한여부 확인 요청(취업승인 신청)서
- 취업예정기관(협회) 장의 취업예정확인서
- 취업제한여부 확인요청(취업승인 신청)에 대한 검토의견서
- 인사기록카드 사본
-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사무분장
- (취업제한여부 확인요청 시) 밀접한 업무관련성 여부를 검토할 수 있는 자료
- (취업승인 신청 시) 취업승인의 특별한 사유 해당 여부 및 부당한 영향력 행사 가능성을 판단할 수 있는 자료
- 임의취업자의 취업제한여부 확인 요청시 당해인이 작성한 임의취업 사유서

4. 우선취업제도

가. 우선취업제도 내용

- 퇴직공직자가 취업제한기관에 취업을 하려는 경우는 사전에 취업제한 여부 확인을 받고 취업하여야 하나 불가피한 사유 등이 있는 경우 업무관련성 여부와 관계없이 먼저 취업을 하게 한 후 취업제한 여부 확인심사는 추후에 실시함
 - 추후 취업제한여부 확인심사에서 밀접한 업무관련성이 있을 경우에는 취업이 제한되며 취업해제 요청함



참고

취업심사 업무 흐름도

